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 기본원칙 규정 신설 >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388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 28.
3. 회 부 일 : 2025.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전입 후 신변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테러, 납치 등 북한의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기본원칙에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원칙) ① ~ ④ (생략) <신설>	제4조(기본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제8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법 제11조),¹⁾ 사회적응교육(법 제15조),²⁾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³⁾

1)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거지원(법 제20조),⁴⁾ 정착지원금 지급(법 제21조),⁵⁾ 교육지원(법

1.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삭제
-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6) 등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4)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6)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출생지,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력 진단·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2조의27)에 따라 거주지 전입 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범죄예방·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위해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⁸⁾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7)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이하 이 조에서 “신변보호”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연장된 기간의 종료 전이라도 보호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종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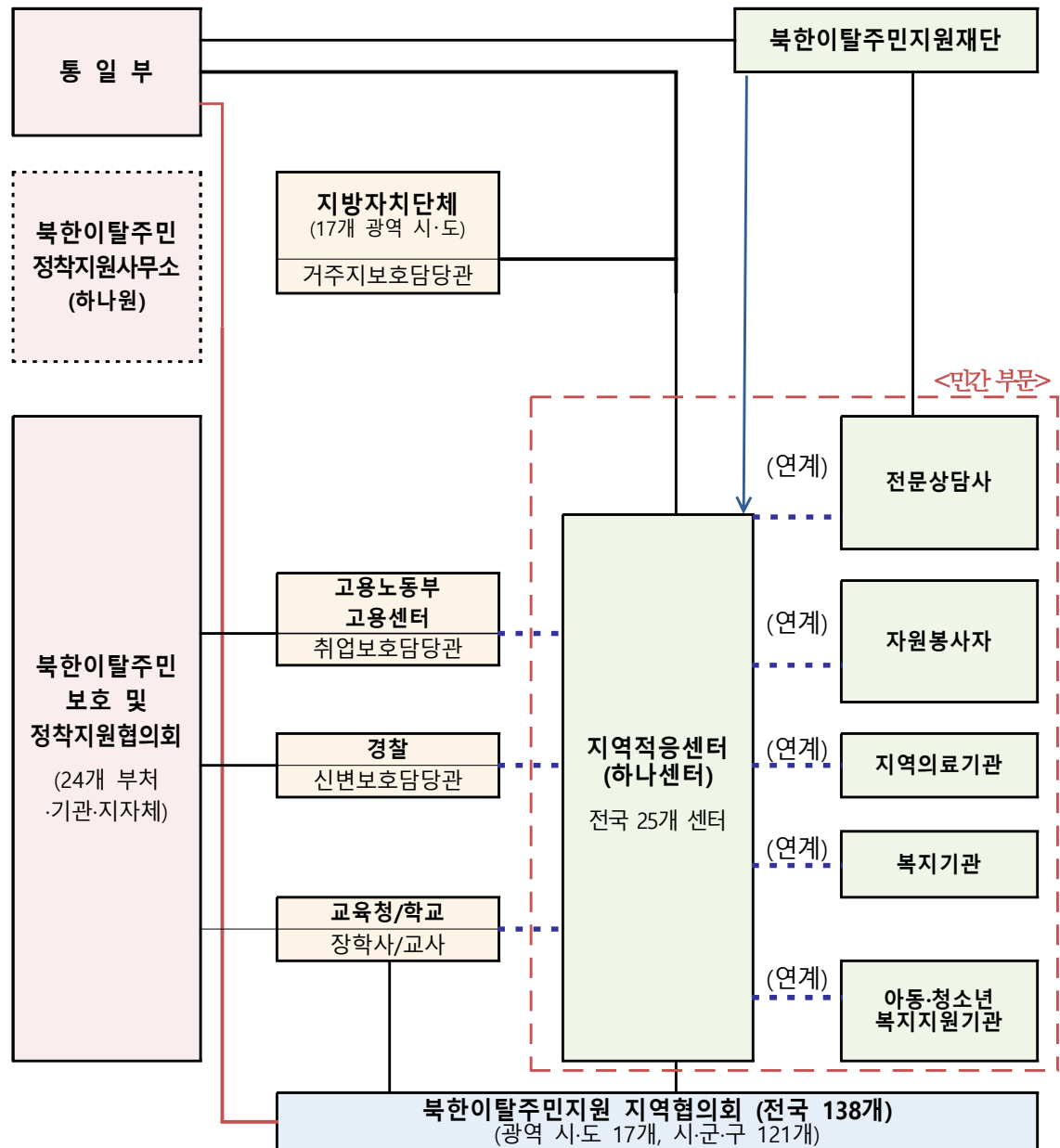
⑤ 신변보호기간 및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신변보호 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 및 종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변보호 협조요청, 신변보호 및 신변보호 재실시의 기간·연장·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참고로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약 60%가 거주지 신변보호 대상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



□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⁹⁾는 기본이념규정으로써 법률을 통하여

- 9)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고, 법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제도 등의 본질적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며,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은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동법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호 관련 정책 또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외에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는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 또는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현행법에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현행법 제4조의3에 따라 통일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매년 수립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신변보호 체계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67